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42-1996-064526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58외 1필지 현대리버티하우스 제5층 제501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58, 261-3 현대리버티하우스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70	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18층 운동시설, 근린생활시설, 업 무시설 및 아파트 1층 1565.21㎡ 2층 1486.03㎡ 3층 1565.11㎡ 4층 1565.11㎡ 5층 991.41㎡ 6층 991.41㎡ 7층 991.41㎡ 8층 991.41㎡ 9층 991.41㎡ 10층 991.41㎡ 11층 991.41㎡ 12층 991.41㎡ 13층 991.41㎡ 14층 991.41㎡ 15층 991.41㎡ 16층 991.41㎡ 17층 675.21㎡ 18층 675.21㎡ 지하1층 1881.74㎡ 지하2층 2064.03㎡ 지하3층 1440.36㎡ 지하4층 2043.82㎡ 지하5층 2041.54㎡ 지하6층 2066.17㎡	도로명주소 2011년12월12일 등기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58외 1필지 현대리버티하우스 제5층 제501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4)	1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58 2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61-3	대 대	2562㎡ 126㎡	2001년3월22일 등기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2001년2월7일	제5층 제501호	철근콘크리트조 217.42㎡	도면편철장 제1책59장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2)	1, 2 소유권대지권	2688분의 30.82	2001년2월7일 대지권 2001년3월22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5)	소유권이전	2001년2월22일 제3638호	1999년11월11일 매매	소유자 한임순 360217-*****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0, 314호 (등촌동, 에스케이그레이스힐)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				
---------	--	--	--	--

-- 이 하 여 백 --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58외 1필지 현대리버티하우스 제5층 제501호

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열람일시 : 2021년04월26일 15시38분03초

3/3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2-1996-064526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58외 1필지 현대리버티하우스 제5층 제501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 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한임순 (소유자)	360217-*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0, 314호 (등촌동, 에스케이그레이스힐)	1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